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31239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6164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312397 판결

전문

원 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도
담당변호사 안형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운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326,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6. 29. 피고명의로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로 금융계좌로 345,300,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2016. 8. 10. 피고명의로 금융계좌로 4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6. 11. 28. 피고명의로 금융계좌에서 원고명의로 금융계좌로 522,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C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명의로 금융계좌로 2017. 3. 29. 383,030,770원, 2017. 4. 11. 230,769,230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9. 피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이율 연 27.9%, 선이자 및 수수료 104,7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6. 8. 10. 4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1. 28. 피고로부터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율 연 13%, 선이자 및 수수료 78,000,000원을 정하여 차용하고, 2017. 3. 29. 383,030,770원, 2017. 4. 11. 230,769,230원을 변제하여, 합계 613,8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받은 금액 중 144,326,359원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위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7.9%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을 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44,326,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거래는 피고의 남편인 망 D이 피고의 명의로 E, F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갑제3호증의1, 갑제6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융계좌와 피고의 금융계좌 사이에서 금전의 왕래가 있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전거래는 피고의 배우자이던 망 D이 피고의 명의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망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있으나, ①을제6, 7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거래 업무는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던 F와 조합원이던 E가 처리하였고 그 상대방은 피고의 남편인 망 D이었는데 위 E 등이 피고와는 만나지 아니하였던 사실과 ②원고가 위 금전대차의 증거로 제출한 갑제3호증의1, 갑제6호증에는 피고의 날인도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16. 8. 10.자 450,000,000원, 2017. 3. 29.자 383,030,770원, 2017. 4. 11.자 230,769,230원, 합계 1,063,8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그 일부청구로서 144,326,359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거래의 상대방을 망 D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 위 송금된 돈 상당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망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금융계좌로 금전을 송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망 D에 대한 채무의 소멸이라는 이득을 얻어서 원고에게 송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